

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(김광성 의원)

의안 번호	5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11월 10일

발 의 자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 박춘희, 김성기, 심현정의원

1. 제안이유

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군수 및 군민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사업 및 위탁근거(안 제4조)

라. 사업추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(안 제5조)

마. 관련 기관·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10. 27. ~ 11. 3.(의회사무과-4605), 의견없음

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보호관찰 대상자 등”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·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평창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사업)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
2.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·교육 프로그램 지원
3.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4.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보호관찰법)

제1조(목적)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(受講) 및 갱생보호(更生保護)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7. 20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4. 「소년법」 제32조 제1항 제4호및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“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“갱생보호 대상자”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4. 5. 20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4조(지원 사업)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
 2.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·교육 프로그램 지원
 3.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 4.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김광성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6